



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
-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부-수도권 3개 시·도 간 업무협약 체결
- 국민 생활에 불편 없도록...중앙·지방정부가 한 걸음씩 양보해 협약 마련

□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일(화)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에너지 환경부, 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 4개 기관 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주재하였다.

* (참석) 김성환 기후부장관, 유정복 인천시장, 김동연 경기도지사, 김태균 서울시행정1부시장

○ 이번 협약은 당초 2015년 4자 간 합의한 대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하면서,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었다.

□ 이를 위해서, 국무조정실은 기후부와 함께 지방정부 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 되도록 입장 차이를 조정하고, 조정안 마련을 지원하는 중재 역할을 수행해 왔다.

○ 이에, 김 총리는 협약식에서 각 기관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 협의하고 이해해 준 덕분에 오늘의 결과가 가능했다며 4개 기관을 높이 평가하고,

○ 어떠한 경우에도 폐기물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정부의 최우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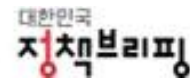
□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부 등 4개 기관은 다음 주요 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.

- ¹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추진, 제도 시행 준비 강화
- ²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·재정적 지원 ³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,
- ⁴기존 4자 협의체 합의사항(‘15.6) 이행

□ 이에, 정부는 폐기물 감량재활용 중심의 자원순환 체계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, 초기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국민 생활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중앙-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김 총리는 이번 협약은 수도권 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, 자원순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, 정부는 중앙-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	이호기 (044-200-2341)
		담당자	사무관	윤남웅 (044-200-2352)
	안전환경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이제훈 (044-201-7400)
		담당자	사무관	문유상 (044-201-7402)
	기후에너지환경부	책임자	과 장	정미선 (02-2133-3670)
		담당자	팀 장	이경옥 (02-2133-3672)
	서울특별시	책임자	과 장	최명환 (032-440-5046)
		담당자	팀 장	김상범 (032-440-3581)
	인천광역시	책임자	과 장	이용균 (031-8008-3520)
		담당자	팀 장	김일수 (031-8008-4261)



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기후부-서울시-인천시-경기도 간 협약

-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·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하며,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재난 발생 시,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시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한 안정화 장치를 법문화하는 등 과도기적 조치를 병행할 필요성에 공감하며,
- 예외적 직매립 허용기준은 4자 협의를 거쳐 마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고, 3개 시·도는 직매립 금지 제도의 전면 시행에 필요한 일선 현장의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.
 - 3개 시·도는 공공소각시설을 조속히 확충하는데 총력을 다하고,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행정절차 단축 지원, 국고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한다.
- ②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예외적인 생활폐기물 직매립량의 경우에도 매립 제로화 추진을 위해 202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기로 합의하며, 세부적인 감축 대상·목표는 4자 협의체 논의 및 「수도권매립지공사법」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.

- 아울러,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며, 구체적인 인상 범위는 예외적 직매립량 감축계획, 처리원가 등을 검토하여 2026년 상반기까지 4자 협의체 논의 및 「수도권매립지공사법」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.

③ 4자 협의체는 '15.6월 체결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의 유효성을 인식하고, 동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한다.

2025년 12월 2일

